

의정부지방법원 2016. 7. 1 선고 2016가단6026 판결 [가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16. 6. 10.

판결 선고 2016. 7. 1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 - 가.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㉠, ㉡, ㉢, ㉣, ㉤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가) 부분 21㎡ 지상의 샌드위치판넬 창고를 철거하고, 위 (가) 부분 21㎡를 인도하고,
 - 나.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㉥, ㉦, ㉧, ㉨, ㉩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나) 부분 7.2㎡ 지상에 설치된 철제우리 및 별지 도면 표시 ㉪, ㉫, ㉬, ㉭, ㉮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다) 부분 16㎡ 지상에 설치된 철제우리, 애완견 4마리, 고무통 4개, 탁자 1개, 애견용품 등을 수거하고, 위 (나), (다) 부분 23.2㎡를 인도하며,
 - 다. 6,850,000원 및 2016. 3. 16.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,5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최복규

별지